

● 제268회 ●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서울글로벌센터 외국인주민
생활지원사업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2016. 6. 16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 서울특별시장 제출 】

의안번호 1217

I. 동의안 개요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가. 제출자: 서울특별시장
- 나. 제출일: 2016. 5. 30
- 다. 회부일: 2016. 6. 1

2. 제안이유

- 가. 서울글로벌센터는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위해 다국어 생활상담, 생활한국어 교육과 법률, 노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인지원시설로,
- 나. 전문기관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장경험을 축적한 기관에 민간위탁 운영 중이며,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재위탁 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시설명 : 서울글로벌센터(생활지원)
- 소재지 : 서울 종로구 종로 38 서울글로벌센터 5층
- 시설규모 : 738.45㎡(전용 426.26㎡)
- 이용대상 : 외국인주민

나. 위탁내용

- 위탁기간 : 3년(2017.1.1.~2019.12.31.)
- 위탁사무
 - 외국인주민의 생활편의 제공을 위한 생활상담
 - 외국인주민 커뮤니티 활성화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외국인주민의 서울생활 정착지원을 위한 사업 등
 - 기타 외국인주민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시설 및 물품관리 운영
- 소요예산 : 1,180,498천원(2016년 기준)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다.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현황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4조의3
- 민간위탁 추진현황

- 1차 최초위탁 : 2008.1.1~2010.12.31(3년) (사)세계선린회
- 2차 재계약 : 2011.1.1~2013.12.31(3년) (사)세계선린회
- 3차 재계약 : 2014.1.1~2016.12.31(3년) (사)세계선린회

라. 민간위탁의 필요성

- 서울글로벌센터는 외국인주민을 위한 다국어 상담, 생활 한국어 교육 등 생활편의 제공과 법률, 노무 등 서비스를 제공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현장에서 경험을 축적한 기관에 위탁 운영 하는 것이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외국인주민의 증가에 따른 지속적 서비스를 위하여 체계적 네트워크 형성과 효율적 운영체계를 갖춘 비영리법인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제11조(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조의3
-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7조(지원의 범위), 제20조(업무의 위탁)

나. 예산조치 : 2017년 예산편성 요구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II.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김태호)

1. 동의안 제출 개요

- 본 동의안은, 그동안 민간위탁으로 추진해오던 ‘서울글로벌센터 외국인주민 생활지원 사업 운영’에 관한 사무가 금번으로 민간위탁 계약 연속 4회 차를 맞이함에 따라,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¹⁾ 제2항의 단서 조항에 의거하여,
 - 동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지속할 것인지(재위탁)에 대하여 서울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 시장이 민간위탁하려는 상기의 ‘서울글로벌센터 외국인주민 생활지원 사업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무 내용은,
 - 외국인주민이 생활편의 제공을 위한 생활상담 및 외국인주민 커뮤니티 활성화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외국인주민의 서울 생활 정착지원을 위한 사업 등 임.

1)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매 4회차마다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서울글로벌센터 외국인주민 생활지원사업 운영 개요

- ‘서울글로벌센터’는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8조2)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외국인 지원시설로,
 -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제11조3)와 상기의 동 조례 제7조4)에 따른 외국인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정보제공 및 상담 등을 지원함.
 - 동 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업은 순수 시비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음⁵⁾.

- ‘글로벌센터’는 외국인시설 가운데서도 다국어 생활상담(10개 국어)에 서부터 생활한국어 교육과 법률·노무 상담 등의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원스톱(One-Stop) 종합서비스 센터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여타의 외국어 지원시설과 구별되며, 현재 서울시 관내 글로벌센터는 동 센터를 포함하여 총 3개소가 운영 중 임(표 1).

2)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8조(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제7조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관련 행정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법인·단체의 직원을 지원시설에 파견 근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3)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제11조(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정보제공 및 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4) 제7조(지원의 범위)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등
2. 외국인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정보제공 및 상담 등
- 3.~ 9.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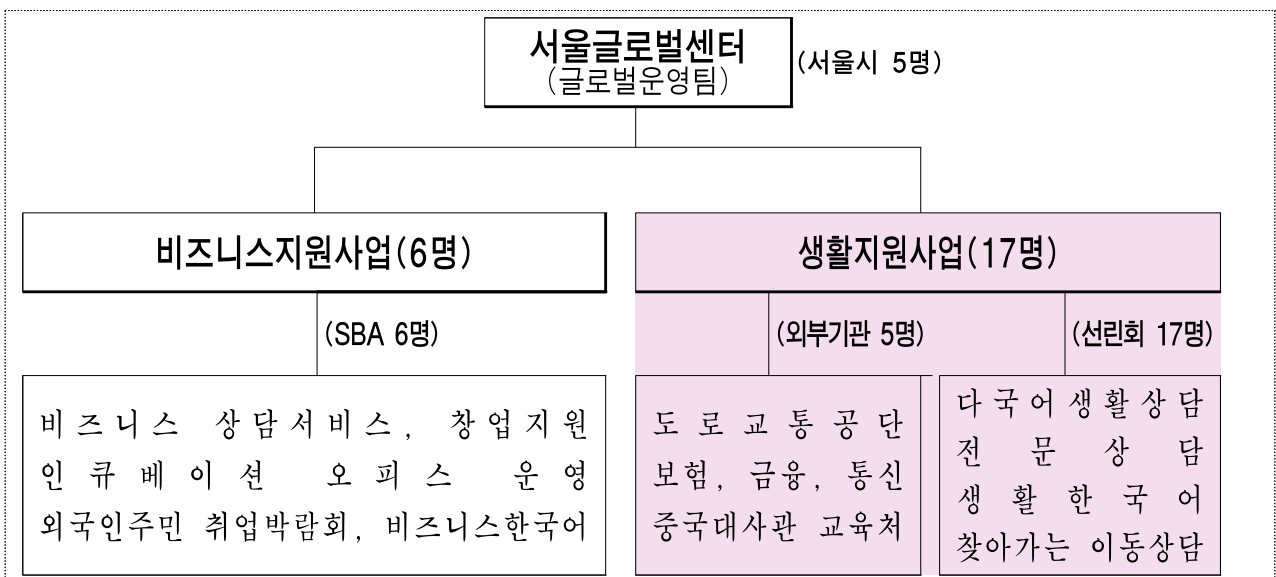
5) ' 16년 예산 : 생활지원사업 1,180백만원, 비즈니스지원 1,760백만원

<표1. 서울시 글로벌센터 운영 현황>

센터명	위 치	규모	개관일	비 고
서울글로벌센터	종로구 종로 38(서린동), 4~6층	1,134.3㎡	'08. 1.23	시소유
서남권글로벌센터	영등포구 도신로 40	935㎡	'14. 9. 1	시소유
동대문글로벌센터	중구 마른내로 146	289㎡	'15.10.7	임차

○ 상기 '서울글로벌센터'의 업무는 크게 외국인에 대한 '비즈니스 지원 사업'과 '생활지원 사업'으로 구분되는데, 이들 사업의 운영은 각각의 업무 특수성에 맞는 민간위탁 업체를 선정하여 각각 민간위탁 하는 형태로 운영되며, 이에 대한 조직도 및 민간위탁 현황은 다음의 <그림 1>과 <표 2>와 같음.

<그림1. 서울글로벌센터 조직도>



<표 2. 서울글로벌센터 민간위탁 운영 현황>

구분	외국인주민 비즈니스 지원 사업 운영	외국인주민 생활 지원 사업 운영
수탁기관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사단법인 세계선린회
운영기간	2014. 1. 1~ 2016. 12. 31(3년)	2014. 1.1~2016. 12.31(3년)
예산 (2016년 기준)	1,760백만원	1,180백만원

- 금번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업무는 상기 업무 가운데 ‘생활 지원 사업 운영’에 관한 사무임.
- ‘생활지원 사업 운영’은 동 센터의 개소(2008년 1월)시부터 현재까지 민간위탁 형태로 운영되어 왔고, 2016년 6월 현재, 민간위탁 3회 차를 맞고 있으며, 2016년 12월 31일자로 그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하려는 것임. 이에 관련 조례 규정에 따라 연속하여 민간위탁 4회 차를 맞이하여, 의회에 재위탁 동의를 받으려는 것임.

<서울글로벌센터 민간위탁 추진 현황>

구분	1차	2차	3차
기간	2008.1.1~2010.12.31 (3년)	2011.1.1~2013.12.31 (3년)	2014.1.1~2016.12.31 (3년)
선정방법	공개모집	재계약	재계약

3. 민간위탁대상사무 지속 여부에 대한 법적검토

- 민간위탁의 대상으로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행정권의 포기과 공익성 실현의 왜곡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법치국가의 원리상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범위와 한계를 분명히 할 것이 요청됨.

- 그런데, 본 동의안에서 위탁하려는 ‘서울글로벌센터 외국인주민 생활지원 사업 운영’에 관한 사무는 재한외국인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정보제공 및 상담 등 대체로 비 권력적이고 전문기술적인 사무가 민간위탁의 대상이 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특별한 문제는 초래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임.

- 또한, 이는 현행의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6)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로서의 그 기준이 적합한지와 동 조례 제6조7)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내용으로 적합

6)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7)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3. 문화·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공원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5. 시립병원, 보건·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여부를 판단해 볼 때도, 상기 센터의 외국인주민생활지원 사업 운영에 관한 사무는 민간위탁 사무로서의 그 법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됨.

4. 민간위탁 대상사무 지속 여부에 대한 정책적 검토

-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실익은 효율성 제고와 공급비용 절감 등 다양할 수 있으나, 사회복지서비스와 같은 휴먼서비스의 경우 그 특성상 서비스의 질과 전문성 제고를 민간위탁의 일차적 목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사회복지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임.
- 따라서, 상기 센터의 외국인주민생활지원 사업 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의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판단은 민간위탁을 통한 서비스 품질의 향상, 전문성의 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를 통한 이용자의 복지향상과 같은 질적 측면에서 효과가 뚜렷한지 여부가 핵심 요소라 할 것임.
- 동 위탁 사무는 서울시 재한외국인에게 안정적인 가정생활과 자립 도모를 위한 다국어 생활상담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 그 사무의 특성상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다년간의 현장

6.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 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7.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8. 영어마을 운영에 관한 사무

9.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경험에 기반 한 서비스 제공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이의 노하우를 지닌 민간단체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 운영하게 한다면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됨.

- 이에 상기 센터의 외국인주민생활지원 사업 운영에 관한 사무를 지속적으로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려는 본 동의안은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짐.

5. 기타 글로벌센터 운영 방향 등에 관한 의견

- 외국인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을 하는 글로벌센터는, 현재 서울글로벌센터와 서남권글로벌센터, 동대문글로벌센터로 서울시 관내 총 3곳이 운영 중이며, 이 가운데 서울글로벌센터는 그 규모나 기능면으로 볼 때 중앙센터로서의 역할을 한다 할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서울시 관내 각종의 외국인지원시설(총 45개소, 별첨자료 참고)들의 말형이자 허브기관이라 할 수 있을 것임.
- 그런데, 현재 서울글로벌센터의 사무 내용은 외국인지원시설의 총괄 또는 허브기능으로서의 역할은 미흡한 상황이며, 현재 서울시 관내 각 외국인시설(총 45개소)별 지원서비스는 상당부분이 유사·중복되는 측면이 있다 할 것임(예. 한글교육 등).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서울시가 외국인지원과 관련한 하드웨어적 시설 확충에 집중해왔던 측면이 있고, 이러한 결과로 이제는 각종 외국인 지원시설이 일정정도 완비된 현실을 감안해 본다면, 이제는 이들 각 시설 간 역할과 기능의 재조정을 통한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검토가 요구됨.

【별첨자료】 외국인지원시설 : 43개소

센터명		위 치	규모	센터장	개관일	비 고
서울글로벌센터		종로구 종로 38(서린동), 4~6층	1,134.3㎡	폴 카버	'08. 1.23	시소유
서남권글로벌센터		영등포구 도신로 40	935㎡	박옥선(중국동포, 명예직)	'14. 9. 1	시소유
동대문글로벌센터		중구 마른내로 146	289㎡	막사르자의 온드라흐 (몽골, 명예직)	'15.10.7	임차
빌리지 센 터 (7개소)	연 남	마포구 동교로 219, 3층	158㎡	劉 峯 (귀화한족)	'08. 1.31	임차
	역 삼	강남구 역삼로7길 역삼문화센터 5층	96㎡	슐레포바 안나 (키르기스스탄)	'08. 4.17	역삼문화 센 터
	서 래	서초구 서래로 28, 3층	160㎡	임지미(미국)	'08. 6. 4	임차
	이태원	용산구 이태원로 211, 5층	158㎡	캐서린 코르테자(필리핀)	'08. 7.14	임차
	이 촌	용산구 이촌로 224, 3층	138㎡	이시하라 유키코 (일본)	'08. 7.14	임차
	성 북	성북구 성북로 134, 1층	245㎡	크나이더 한스알렉산더(독일)	'09.11.29	舊 성북 2동청사
	금 천	금천구 가산로 116	454㎡	금천구 직영	'14. 9. 1	임차
비즈니스 센 터 (2개소)	강 남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2층	85㎡	이성욱(서울산업진흥원)	'10. 5.17	임차
	여의도	영등포구 여의도동 23 IFC One동3층	141㎡	강민정(서울산업진흥원)	'12.1.12	임차
문화체험 센 터	명 동	중구 명동8길 27 M플라자 5층	692㎡	양선영(서울관광마케팅)	'09. 3.16	무상임대
외국인 근로자 센 터 (6개소)	성 동	성동구 무학로 6길 47-1	452㎡	석원정(노동인권화관)	'01.12.14	단독시설 (서울시 소유)
	금 천	금천구 가산로 129	65㎡	김해리나(도미니카수도회)	'07. 5.1	사회복지관 내 (임 차)
	은 평	은평구 은평로 21길 14-26	37㎡	오은석(기독교대한감리회)	'08. 3.13	" (임 차)
	강 동	강동구 성안로 13길 56	46㎡	홍사엽(대한사회복지개발원)	'08. 3.15	" (임 차)
	성 북	성북구 오패산로 16길 23	23㎡	이경희(진각복지재단)	'09. 4.30	" (임 차)
	양 천	양천구 신목로 16길 27	70㎡	김학문(평화복지재단)	'09. 4.28	" (임 차)

센터명	위 치	규모	센터장	위탁기관	개관일	비고	
다문화 가족지원 센 터 (24개소)	동대문	동대문구 왕산로 32길 99	77㎡	이영순	사)한국건강가족실천 운동본부	'06. 9. 1	
	성 북	성북구 보문로 95 천주교노동사목회관 2층	551㎡	김현혜	천주교서울대교구 이주사목위원회	'07. 2. 1	
	영등포	영등포구 영등포로 84길 24-5 신길종합사회복지관 4층	99㎡	공상길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07. 3. 1	
	동 작	동작구 동작대로 29길 63-26 3층	196㎡	김예리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08. 3.12	
	용 산	용산구 이태원로 274 용산여성문화회관 1층	960㎡	황혜신	상명대학교 산학협력단	'10. 1. 1	
	송 파	송파구 마천로 41길 12	330㎡	박연진	사단법인 섬김과나눔	'07. 4. 1	
	종 로	종로구 창신길 124 동부여성문화센터 2층	180㎡	강영규 성미애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10. 1. 1	
	광 진	광진구 능동 30길 23, 2층	130㎡	이채희	사회복지법인 사랑의집	'10. 2. 1	
	중 량	중랑구 용마산길 369	563㎡	김영희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10. 1. 1	
	강 북	강북구 인수봉로 66길 9 강북 여성 보육정보센터 4층	444㎡	송은일	성신여대 산학협력단	'10. 1. 1	
	노 원	노원구 동일로173가길 94 가운빌딩 4층	399㎡	장사열	사회복지법인 삼육재단	'10. 3. 1	
	은 평	은평구 서오릉로 156, 3층	231㎡	양한연	학교법인 환원학원	'10. 1. 1	
	서대문	서대문구 증가로 244	487㎡	강주현	학교법인 이화학당	'10. 1. 1	
	마 포	마포구 양화로 1길 22 홀트이동복지회 3층	445㎡	길기선	사회복지법인 홀트이동복지회	'10. 1. 1	
	강 서	강서구 강서로 5길 50 곰달래문화복지센터 4층	800㎡	박정숙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10. 1. 1	
	구 로	구로구 디지털로 32가길 50	223㎡	김유순	성공회대학교 산학협력단	'10. 1. 1	
	금 천	금천구 금하로 11길 40	686㎡	장진경	숙명여대 산학협력단	'10. 1. 1	
	관 약	관악구 쑥고개로 128	165㎡	진미정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10. 1. 1	
	강 동	강동구 양재대로 138길 41	1,111㎡	이광진	사)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시민의 모임	'10. 1. 1	
	강 남	강남구 개포로 617-8	1,087㎡	신민선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	'10. 2. 1	
	성 동	성동구 무학로 6길 9	485㎡	이정숙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11. 1. 1	
	도 봉	도봉구 도봉로 552 도봉구민회관 2,3층	152㎡	신화용	학교법인 덕성학원	'11. 1. 19	
	양 천	양천구 화곡로4길 10	65㎡	윤명자	상명대학교 산학협력단	'11. 1. 1	
	중 구	중구 동호로 8다길 22 3층	244㎡	전미경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13. 9. 12	